

노터스 정관 변경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물 임상의학 연구업 2. 수의학 임상 교육사업 3. 동물용품 도소매업 4. 의료기기 및 소모품 도소매업 5. 의약품 개발, 제조 및 유통업 6. 의료용 기계 수출입업 7.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 대행 서비스업 8. 실험동물 도소매업 9. 실험동물용 시약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10. 이화학기기, 실험연구기자재 도소매업 11. 실험동물 연구소 설립 및 컨설팅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3. 생명과학 연구개발, 연구대행 및 컨설팅 14.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연구개발, 제조 및 유통업 15. 영농법인 컨설팅업 16.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제조 및 유통업 17. 의료용 신소재 연구개발 및 신소재 유통업 18.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제조업 및 유통업 19. 동물용 사료연구개발, 제조 및 유통업 20. 신약 연구개발 및 제조업 21. 고부가가치 의료용품 연구개발,	제2조 (목적) 1.~24. < 동> 25. 동물용 치약,비누,화장품,기타세제 제조 및 유통업 26. 기타 의료용 무선 통신장비 제조 및 유통업 27. 동물용품 제조 및 수출입업 28. 전자상거래업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조업 및 유통업 22. 부동산 임대업 23. 기계설비, 판넬공사, 클린룸공사, 항온항습시설 공사업 24. 줄기세포 연구개발, 제조업 및 유통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구리시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시에 둔다. ② <좌 동>	-본점 소재지 이동에 따른 변경
제8조의 2(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제8조의 2 (삭 제)	-주권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신 설>	제13조의 2(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 준일의 예외) ①이 회사는 저원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 회사는 매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③제1항의 경우 이 회사는 매년 1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확정 개정 및 신설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 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u>행사할 주주로 한다.</u> 제17조(소집시기) ① <좌 등>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또는 제13조2의 제3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의장) ① <좌 등>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u>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좌 등> ② <좌 등>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선택 사항 추가 -대표이사 유고시 주총회 의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좌 등> 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이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 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이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45조의 2(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재무제표 확정 개정 및 조항 추가 -재무제표 확정 개정 및 조항 추가 -분기배당 조항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9.2.4.)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개정 2012.1.16.)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신설 2012.1.16.)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 2016.12.26 개정 2019.03.29 개정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 행된 것으로 본다. 직 이 정관은 제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 인한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다.	개정일 추가